#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84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허 영·소병훈·조인철

전재수 · 임호선 · 박성준

박지혜 · 황정아 · 위성곤

박 정ㆍ이기헌ㆍ박정현

김현정 • 박용갑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 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 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 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 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 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 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 해당 위원회-----

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 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 설>

<신 설>

4. ~ 8. (생 략) ② ~ ⑥ (생 략)


-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
  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
  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 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